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4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해석요청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를 보완하고, 고액의 관세포탈범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내용·공개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 조사·부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해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관세법 해석에 관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관세포탈법의 성명·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법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지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외형이나 포장방법, 용도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가 담당하며, 부과요청인에 의한 조사 신청 이외 무역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허용하는 한편, 조사신청 절차·제출 자료·조사 개시 및 이해관계인 협조 요청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는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도록 함.
- 라. 납세자 본인이 관세청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로 규정함.

마.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기준을 설정함.

바. 관세청이 법무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마약밀수·유통 범죄이력자,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양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6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